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7

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 박상웅ㆍ김희정ㆍ김미애

박준태 · 최형두 · 박덕흠

신성범 • 이만희 • 윤재옥

신동욱 · 김상훈 · 김 건

이상휘 • 유영하 • 이인선

한기호 • 이종욱 • 서일준

김태호 · 성일종 · 김용태

서천호 · 장동혁 · 강대식

김민전 • 권성동 • 정연욱

최은석 • 이달희 • 유용원

김원이 의원(31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, 의료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, 교통 인 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 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·교육시설의 유지·관리 및 개선, 도로의 유지·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·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중 "보육환경 개선"을 "시설 등을 포함한 보육환경의 유지·관리 및 개선"으로 한다.

제22조제8항 중 "하여야 한다"를 "하고, 교육시설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"로 한다. 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「도로법」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도로의 건설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조세의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보육기반의 확충) ① •	제21조(보육기반의 확충) ① 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	③
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	
집의 <u>보육환경 개선</u> 을 위하여	시설 등을 포함한 보육
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	환경의 유지·관리 및 개선
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	
수 있다.	
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 ① ~	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 ① ~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	8
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	
시설(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	
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	
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	
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적절히	
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<u>하</u>	<u></u> <u> </u>
여야 한다.	고, 교육시설의 유지·관리 및
	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
	•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⑨ ~ ⑫ (생 략)	⑨ ~ ⑩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	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성을증진하기 위하여 「도로법」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도로의 건설및 유지・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8조의2(조세의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